

위믹스의 가상자산 발행 회계처리의 쟁점 정리

Index

- 01 I. 요지
- 02 II. Wemade 적용 회계기준의 판단
- 04 III. 사실관계
- 05 IV. 쟁점사항
- 06 V. 쟁점요약

I. 요지

'21년 4분기 주식회사 Wemade는 Wemix 토큰의 매도 이후,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총액, 투입원가 등을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처리한 뒤 발생차익을 영업이익으로 인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Wemade는 이후 선수수익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정공시를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상기 발생한 회계처리 방식의 쟁점과 이로 인해 발생할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Wemade 적용 회계기준의 판단

현재 모든 사업자신고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의 비치의무를 부여받는다. 특히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상인의 경우 상법 제29조 ~ 33조에 따른 상업장부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부여받고 법인격을 부여받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할 것을 그 의무로 하고 있다. 상기 상업장부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회사의 직접적 이해관계자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에게 거래, 차입, 투자 등의 행위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상기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 문제 혹은 식별 불능 자산을 파악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회계장부 작성의 회계기준은 본디 각 국가별로 다른 관행(GAAP¹)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5년 이후 국가간 자본이동 과정 중 정보비용을 재고하자는 취지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의 적용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낮추고 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K-IFRS의 점진적 적용을 공표하였고, 현재 전체 적용되기 이른다.

한국의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회계기준을 따르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IFRS와 GAAP는 그 적용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GAAP는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을,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고, IFRS의 경우에는 GAAP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위믹스의 적용 회계기준 판단: K-IFRS

현재 국내에서 IFRS 의무적용 기업은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시행령 6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6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에 주권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믹스는 IFRS 적용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회계처리기준)

제6조(회계처리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¹ 한국의 경우에는 K-GAAP라고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떤 계정으로 계상할 것인지에 난점이 있다. IFRS 기준에 따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가치의 변동성이 높아 일정하게 측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자의 상환의무가 달리 존재하지 않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에도 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검토된 계정은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계정이었다.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가상통화의 분류²

질의 내용: 식별가능한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고(시스템임) 쌍방 간의 계약을 징표하지 않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회신 요지:

→ 영업목적의 암호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암호자산의 요건

- 1)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된 것
- 2) 관할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것
- 3)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

나. 암호자산은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큼,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의에 충족되지 않음**”.

다.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혹은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가 아님**”. 따라서,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함.

IFRS 1002호 §6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상품, 제품)
-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재공품)
-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원재료)

IFRS 1038호 §7

무형자산이라 함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식별가능하며,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50% 이상인 자산을 말한다.

² <https://www.kifrs.com/qnas/2019-I-KQA017>

III. 사실관계

- 위메이드의 재무제표상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년 2분기 반기보고서이며,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하여 인식하였다. 해당 시점에는 위믹스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코인 및 토큰도 존재하였다.
- '21년 4분기 위메이드는 대량의 위믹스를 매각하였고 이전에 인식하였던 위믹스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매출 2236억, 매출원가 704억 상당을 인식하였으나, 해당 과정에서 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매출금액 2236억 상당을 선수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22. 3. 30. 사업보고서 14. 무형자산 (5)

(5) 연결실체는 Wemix Network의 활성화를 위해 보유중인 Wemix Token을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소에 판매(유동화)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동화의 대가로 다른 암호화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을 수령하며, 수령 시점의 공정가치로 선수수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수수익은 Wemix Network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고 회수한 Wemix Token에 비례하여 플랫폼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 공시의 내용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판매하면서 그 대가를 “**포인트 유동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를 “**상품권 회계처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상품권 회계처리 방식

- 상품권이라 함은 권리의 행사가능기간 내에 발행자 혹은 그와 연관된 제3자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시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해 상품권에 기재되어있는 액면금액 상당의 등가물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 된 증표로, 발행주체와 소멸시효, 유효기간, 액면금액 등이 정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상품권 판매의 경제적 실질은 판매촉진을 위한 행위로서, 차후 발행자 혹은 그와 연관된 제3자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시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권 회계처리는 발행시점에 수취금액 상당을 차후 판매행위를 위한 선수금(부채)으로, 할인금액 상당을 할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추후 용역 혹은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 상당의 선수금을 차감함으로써 상품권 회계처리를 종결한다.

IV. 쟁점사항

- 위믹스와 상품권의 차이

	상품권	위믹스 코인
경제적 실질	회수의무 있는 증서	자산의 매각
행사가능기간	있음	없음
발행자의 매입의무 (회수 의무)	환불 가능	환불 불가능
회수가능성 (서비스 사용가능성)	높음	낮음
쟁점사항	위믹스 코인을 상품권 판매의 방식으로 선수수의 처리하였으나, 상품권의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반면, 위믹스 코인의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낮음. 특히 환불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믹스측의 선수수의 상당 금액은 실현가능성이 낮음.	

- 재고자산/무형자산이 아닌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발생하는 효과

	재고자산/무형자산	선수수익
자산효과	1) 판매한 자산 상당금액이 자산에서 제거되며 자산 감소 2) 대가 상당액이 자산에 계상되며 자산 증가	1) 대가로 수취한 현금 상당액이 자산으로 계상 (자산 증가)
부채효과	효과 없음.	선수수의 상당 금액 부채로 계상
자본효과	매각차익 상당금액이 이익으로 계상되며, 손익계산서 결산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에 계상	효과 없음
부채비율 효과	이익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	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
법인세 효과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익 상당금액이 과세대상이 되어 법인세 과세	효과 없음 (상당금액 이연효과 발생)
회계처리 효과	이익잉여금 상당이 배당가능이익이 됨으로 법인에 유입된 현금 중 일부가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회사의 자본적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수주의 ³ 관점	IFRS의 지침 변경 등 불확실한 사건이 예정 되어있으나 수익이나 이익으로 인식함에 따라 보수주의 약화 특히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사외유출 될 수 있으므로 자본부실 상승 (보수주의 약화)	명확한 IFRS상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선수수익으로 처리하여 추후 정책 변경등을 통하여 처리 (보수주의 재고가능)

3 기업의 재무상태 및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사건이 있을 때, 비용은 선인식하나 수익이나 이익은 늦게 인식하는 방식의 처리를 말함.

V. 쟁점요약

- 1) 상품권은 그 성격상 상사채권으로, 유효기간 혹은 소멸시효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위믹스 코인의 경우에는 행사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회사가 상환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품권의 회계처리는 행사가능기간 내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업체에 대해 액면금액 상당의 등가물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의 증표이므로 합리적으로 실현가능성 여부를 타진가능하지만, 위믹스의 경우에는 "행사가능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기 회계처리 방식처럼 선수이자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위믹스 코인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선수이자의 실현가능성은 낮아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차익 상당의 법인세이연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법인세 지연 납부에 따른 기간이익을 발생시킨다.

- 2) 주식회사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지배구조상 "박관호 의장"이 4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통결의⁴ 및 특별결의⁵ 상 지배력이 강한 특징을 갖는다. 특히, 보통결의 사항에서는 이사, 감사 등의 보수를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 등을 결정하므로, 배당의 방식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당의 방식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나 상여 지급을 통해 축적된 자본 유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비록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이 보수주의에 부합하긴 하나, 상기 기재된 방식으로 소득처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차라리 법인세 과세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부합한다.

위메이드 사업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 '22. 3. 30.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관호	본인	보통주	14,835,388	44.19	14,835,388	43.90	-
장현국	임원	보통주	139,850	0.42	363,354	1.08	주3)
계		보통주	14,987,238	44.60	15,198,742	44.97	-
		-	-	-	-	-	-

4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1/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찬성 (상법 제368조)

5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 (상법 제434조)